



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 사업

운영안내서

2023. 3.

Ј○○○ 전라북도콘텐츠용합진흥원

| Part 1.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2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Part 2. 과제신청서 양식 7 |
| Part 3.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19 |
| |
| |

목

차

과제신청서 작성요령

1. 등록서류 목록

 누락된 서류 및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본을 추가 접수하지 않음 (서류 미제출은 '과제탈락'의 사유가 될 수 있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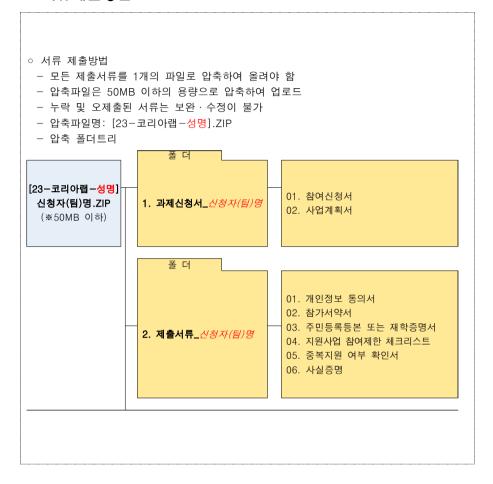
| 구분 | 번호 | 제출서류 | 제출 유의사항 | 제출방식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과 제 | 1 | 참여신청서 | · O 4쪽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| |
| 신 청 서 | 2 | 사업계획서 | V 45 284 5824 61 | |
| | 1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ㅇ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| 스캔(PDF) 및 |
| <u> </u> | 2 | 참여서약서 | | 압축(ZIP) |
| 2 제 출 | 3 | 주민등록등본 또는 도내소재 대학 재학증명서 | | |
| 호 서 류 | 4 |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| | |
| π | (5) |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| | |
| | 6 |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| ㅇ 국세청(홈택스) 발급 | |

[주의사항]

- ㅇ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·삭제·대체될 수 없음
- o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
- 1 - - - 2 -

2. 서류제출방법



3. 신청서 작성안내

가. 참여신청서 작성안내

- 1) 아이템명(과제명)은 15자 내외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
-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전산에 등록
- 2) 작성자는 신청자(팀)명, 콘텐츠 창작·창업 관련 내용 등 기재
- 3)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

나. 사업계획서 작성안내

- 1) 팀 구성 등 기본사항 작성
- 2) 창작 아이템의 소개 및 향후 사업화 방향 등 작성
- 아이템의 컨셉, 제작 진행상황 작성
- 사업수행내용(향후 제작추진 일정, 사업화 방안 등)
- 사업비 사용계획 작성
- 4)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
- 5) 한글(hwp)로 작성, 글자 모양 및 문단 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(단,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)
- 6) 항목별 해당 시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이래 "해당 시항 없음" 명시
- 7) 설명을 위하여 기재된 양식의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
- 8) 사용된 영어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반드시 기술
- 9)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
- 10)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, ~을 제공할 수 있다, ~이 가능하다, ~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



4. 접수안내

가. 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 및 접수기간: 2023. 3. 14.(화) ~ 4. 11.(수) 15:00까지
- ※ 제출시간 엄수
- 마감 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으면 추가 접수 불가
- 나. 접수방법: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ㅇ 온라인 접수
- 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.gosims.go.kr 을 통해 접수
- e나라도움 기입 및 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〈신청서 작성〉 탭 클릭 및 접수 진행
- 시스템 접수 문의처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(1670-9595)
- 다. 사업 관련 문의처

로컬사업팀 류인창 선임

- **a** 063)288-8356
- ※ 문의시간: 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 및 공휴일 제외)



5.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

| 용어 | 설 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원과제 | ▶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- '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'에서 '지원과 제'란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프로젝트(콘텐츠)를 의미함 |
| 보조사업자 | ▶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|
| 사업비 (지원금, 보조금) | ▶ 사업비: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금 -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지 급하는 금액 |
| 협 약 | ▶ 전담기관(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)의 장과 보조사업자의 대표자와 계약행위 |
| 대표자 | ▶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,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와 진흥원의 지원사항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▶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사업에 관한 월간보고서,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|
| e나라도움 시스템 | ▶ 보조금 중복 ·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도입된 시 스템으로, 주관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-변경-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(관련 URL : <u>www.gosims.go.kr</u>) |

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

<표지>

※ 접수번호:

참여신청서 양식

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 신 청 서

아이템명(사업명) 팀명

* 아이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

2023. .

- 7 -

2023 콘텐츠코리이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 참여신청서

※ '빨간색'의 안내 문구'는 참고 후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내용 기재하여 제출

| 팀명 | | | 아이템명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|
| | | | | | | | | |
| 대표자 명 | | | 생년월일 | 1900 | .00.00. | 성별 | 남 / 여 | |
| 핸드폰 | | | e-mail | | | | | |
| 지원분야 | 실김 | 콘텐츠 | 세부분야 | VR, | 게임, 웹 | 툰, 일러스 | 스트 등 | |
| 주소 | | | | | | | | |
| 시업장 주소지(예정) | | | | | | | | |
| | 7 | 1간 | - 1 | 근무처 | | 담당업 | 무(직위) | |
| 경력 | 부터 | 까지 | | | | | | |
| 0 1 | '20. 10. '22. 5. | | 전라북도 | 도 콘텐츠기업 | | 실감콘텐츠개발(담당) | | |
| | | | | | | | | |
| 콘텐츠 | 입 | 상명 | 입상일자 | 시행기관 | | 비고 | | |
| 창작 관련 입상실적 | 2021년 | 콘텐츠대상 | '21. 11. 1 | 5. 전 | 라북도 | | | |
| | 7.05 | 1/13 5 | 7.0011/- | 1507 | ,,,= | 11 71 71 | | |
| 콘테츠 | <u></u> | g/자격증 | 교육일자/취 | | | 행기관 | 비고 | |
| 창작 관련 | 2021년 콘턴 | ll 츠창작패키지 | '21. 15.~20(3 | | 전리 | 라북도 | | |
| 교육/자격증 | GT | Qi 2급 | .22. | 2. 7. 한국생산 | | 산성본부 | | |
| 콘텐츠 창작 지원 동기 | - 적성에 맞는 분야이고, 개발하기 위해서 -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- 도전적이이고 창의적 | | | | | | | |

상기와 같이 [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(크레이에이터) 랩 제작지원]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신청자: (인)

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

2023 콘텐츠코리이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 시업계획서

□개요

* 내용을 요약하여 최대한 핵심내용 중심으로 작성(증빙서류 등은 별도첨부)양식의 목차,
 표의 내용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(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유지)
 필요시 사진(이미지), 표 추가 가능 (*빨간색 글씨는 작성 후 모두 삭제후 제출)

| 팀명 | | | 아이템명 | !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|--|
| 지원분야 | | | 사업장트 | 게임 | 임, 웹툰, 일러 | 스트, 방송 등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직책 | 이름 | | 팀 내 | 구체적인 역할 | | | |
| 대표 및 | 대표 | 흥길동 | | | | | | |
| 팀 원 | 팀원 #1 | | | | | | | |
| | 팀원 #2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구분 | | 내용 | ; | | 비고 | | |
| | 콘텐츠 창작 아이템 소개 | - 창작 아이텀 | 어떤 아이템인지창작 아이템을 언제, 어떻게 생각하고, 발전시켜 왔는지 등 작성 | | | | | |
| 세부 설명 | 핵심 컨셉 (차별화) | - 해당 아이템의 컨셉은 무엇인지 - 기존 아이템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등 작성 | | | | | | |
| | 현재 ? | 이 인행 상황 | 이디어 | 기획 | 제작 | 완성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현재 진행상 | 황에 v 체. | 3 | | | |
| | 구분 | | 내용 | | | 비고 | | |
| 목표 | 결과물 | - 창작랩을 통해 만들 최종 결과물 (ex 3분 이내 영상 5편) | | | | | | |
| | 향후 계획 | - 해당 아이템 활용 방안(유튜브 업로드, 이모티콘 출품 등) | | | | | | |
| | 다 | l표자 | | | | (직인/서명) | | |

□ 사업내용

※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[표]와 [작성가이드(※빨간쌕 글씨)]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.

· 「2023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어터) 랩 제작지원 L 공고문에 기재된 평가기준을 참고 작성

∘각 항목 당 작성내용은 『작성 가이드』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(※도표/그림 활용 지향)

∘각 항목 당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, 사업내용은 3페이지 내외 작성 <용지서식>

용 지 : A4(국배판) [폭 210㎜ × 길이 297㎜]

용지여백 : (위쪽) 15mm. (머리말) 10mm. (왼쪽. 오른쪽) 20mm. (꼬리말)5mm. (아래쪽)10mm

1. 기획 우수성

1-1. 콘텐츠 창작의 목적

ㅇ 아이디어 소개

○ 자신만의 창작 스토리 등 작성

1-2. 사업추진 일정

₩ 필요시 표 추가 하여 작성

| | | | 2 | 추진일정 | | | | |
|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
| 구 분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일정별 주요내용(수행결과물) |
| 기획 | | | | | | | | - 기획서 |
| 기득 | | | | | | | | - 스토리보드 등 |
| 테스트 및 | | | | | | | | - 개발 콘텐츠 테스트 |
| 시제품 개발 | | | | | | | | - 콘텐츠 개발 |
| 마케팅 | | | | | | | | - 온/오프라인 홍보 등 |

1-3. 산출내역서

- ※ 5.000천원 제작지원비 지급 가정 산출내역서 작성
- ※ 추후 사업비 산출내용 변경 가능

Ο

| 목 | 세목 | 금액(원) | 산출내역 | 비고 |
|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| | 촬영 소품 32,000원x10개=320,000원 | |
| | | | 기타부품비 20,000원x15개=300,000원 | 회계검토 |
| | 일반수용비 | 1,200,000 | 인쇄물 및 홍보 포스터 제작=300,000원 | 수수료 |
| | | | 회계검토수수료 280,000원 | 필수계상 |
| 운영비 | | | ※회계검토 수수료 변동 가능성 있음 | |
| | 이쉬르 | 1 200 000 | 스튜디오 임차료 200,000원×2일=400,000원 | |
| | 임차료 | 1,300,000 | 장비 임차료 150,000원x6일=900,000원 | |
| | 일반용역비 | 2,500,000 | 영상 전문제작 2,500,000원=2,500,000원 | 2개월 |
| | 클린중력미 | 2,300,000 | 공경 선군세곡 2,000,000전=2,500,000전 | 개발 |
| | 총계 | 5,000,000 | ※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| |

2. 콘텐츠 경쟁력

- 2-1. 콘텐츠 아이디어의 구체성
 - 창작 아이템의 구체적인 제작 진행 상황 작성
 - ㅇ 자신이 생각하는 최종 제작 결과물 작성
- 2-2. 콘텐츠 아이디어의 차별성
 - 창작 아이템이 가진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 작성

3. 수행능력

- 3-1. 수행의지
 - 본인의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참여 동기 및 수행 의지 작성
- 3-2. 창작 관련 활동 경험
- ☀ 하단 표 삭제 가능
- 창작 관련 교육 수료 및 창작 활동 경험 내용 작성

| 교육명/활동명 | 교육일자/활동일자 | 시행기관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2021년 콘텐츠창작패키지 | '21. 10. 15.~20(30시간) | 전라북도 | |
| 사내 공모전 | 22. 7. | 전라북도 | |

3-3. 관련기술

- ※ 하단 표 삭제 가능
- 본인이 가진 창작 관련 기술 작성

| 자격증 | 교육일자/취득일자 | 시행기관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GTQi 2급 | .22. 7. | 한국생산성본부 | |
| | | | |

4. 사업성

- 4-1. 콘텐츠 상용화 가능성
 - 해당 창작물의 시장 진출 가능성(시장 분석, 타겟 설정 등)
- 4-2. 향후 지속 가능성
 - 향후 콘텐츠 제작 활동을 이어갈 계획 작성

※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※

- 가. 대표자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해 작성
- 나. 위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. 신청업체는 국고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해야 하며,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(복리후생비, 특근매식비, 휴일 근무수당,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기재 불가)
- **다.** '사업비 산출내역'의 세부내역별 산출내역에 단가, 횟수, 인원수,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 (천원 단위 미만 절사)

1. 일반수용비

- 지식 재산권 등록비용, 특허 출원비 산정 불가
- 재료비(콘텐츠 시제품 제작에 실사용 되는 재료만 인정)
- 회계검토 수수료 28만원 계상(금액 일부 변경될 수 있음)

2. 임차료

- 과제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의 경우, 임차를 통해(임차료 편성) 과제를 수행하거나 임차 불가시 사업비 외 대표자 자체 부담을 통해 자산을 마련해야 함
- 장소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또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대료만 인정

3. 일반용역비

- 지원금의 50% 이내 일반용역비로 책정 가능
- * 내부직원 대상으로 지급 불가, 사업자 등록 1년 이하의 업체 지급 불가

※ 최종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 1식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

본 과제와 관련된 모든 지원금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인정

[붙임 1]

개인정보 조회 ·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ㅇ 신청시 대표자. 팀원(팀원이 있으면)을 모두 기재. 서명하여 주십시오.

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
| 아이템명 | 성명 | 직위 | 생년월일 | 동의 여부 | 서명 |
|--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□ 동의 / □ 거부 | |
| | | | | □ 동의 / □ 거부 | |
| | | | | □ 동의 / □ 거부 | |
| | | | | □ 동의 / □ 거부 | |
| | | | | □ 동의 / □ 거부 | |

본인은 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(이하 '진흥원')의 '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직 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'과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합니다.

가. 수집·이용·제공 목적

- 진홍원이 지원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랩 제작지원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 집과 이용
- 진흥원이 지원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랩 제작지원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(정 산 시)
- *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
- 나.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직장 주소, 자택 주소, 전자우편, 학력(학교, 전공, 학위 등), 경력(기간 직위 등)
- 다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·제공 기간
-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, 접수 기간,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(영구)
-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(3년)
- 라.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
-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
- 거부에 따른 불이익 :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햇관리치침 등 관련 제규칙에 의거한 제재조치

2023. 00. 00.

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

[붙임 2]

서 약 서

본인은 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(이하 "진흥원")에서 실시하는 '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 사업' (이하 "사업")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진흥원의 본 사업과 관련한 평가, 점검의 공정함에 대해서 확신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2. 본인은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신청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허위사실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.
- 3.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정하는 규정과 규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,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.
- 4. 본인은 사업에 선정된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신청·참여제한대상으로 판명 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,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며,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화하다.
- 5. 본인은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으로 소기의 성과(목적)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
- 6. 본인은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한 아이템으로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약하고, 향후 지원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.
- 7. 본인은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신청 및 협약에 근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지 및 해약, 진흥원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8. 실물 제작 콘텐츠 아이템인 경우 1점(set)은 진흥원에 제출한다.

2023. 00. 00.

서 약 자(대표): (인)

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

[붙임 3]

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

| 구분 | 체크사항 | | |
|----|--|-----|----|
| 1 | 신청일 현재 신청자가 우리 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를 초과하지 않는다. | YES | NO |
| 2 | o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우리 원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적이 없다. | YES | NO |
| 3 | ㅇ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. | YES | NO |
| 4 | o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 를 받은 자가 아니다. | YES | NO |
| 5 | o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, 보조금 수급의 제한, 참여제한 조치 를 받은 자가 아니다. | YES | NO |

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월 일

팀명: / 대표자: (서명)

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

[붙임 4]

중복지원 여부 확인서

과 제 명:

팀 명:

대 표 자: (서명)

본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(크리에이터) 랩 제작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- o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o 협약체결 전에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을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, 제안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년 월 일

(재)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



<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(안)> 목·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(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)

(): 목 ● 세목번호

| 목 | 세 목 | 용 도 [산정 및 정산기준] |
|-------|------|--|
| | | 《재료비》 1. 사업용 및 시험 연구, 실습/시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2.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(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, 보조 지료비등 구분) |
| | | 산정 및 정산 기준 >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실 재료성의 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 인정 |
| | 일반 | 부가가치세 불인정 |
| | 수용비 | ㅇ 계약에 의한 납품 또는 결과물 제출에 사용되는 재료비 |
| | (01) | ※ 장비로 분류되는 재료 구입 불가(특수한 콘텐츠의 경우 진흥원 담당자 문의) |
| | | 〈인쇄비 및 유인비〉 |
| | | 1.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를 |
| | | 및 유인물의 제작비 |
| | | (산정 및 정산 기준) |
| 운영비 | | o 콘텐츠 창작물 홍보자료 출력등에 사용되는 공금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 인경 |
| (210) | | 부가가치세 불인정 |
| | | 1.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|
| | 임차료 | 2.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〈 산정 및 정산 기준 〉 |
| | (07) | 이 기본방침으로 유형자산 취득은 지원하지 않음 |
| | (07) | O 지원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인정 |
| | | |
| | | 1. 보조사업자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등의 일반업 ⁹ |
| | | 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|
| | 일반 | < 산정 및 정산 기준 > |
| | 용역비 | ㅇ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시,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 인정 |
| | (14) | 부가가치세 불인정 |
| | | ※ 지원금의 50% 초과 책정 불가 |
| | | ※ 용역사 선정에 대한 근거(전문성, 비교견적 등) 확보 필수 |
| | | 금 지급 및 공간/장비 대여의 경우, 지원자 대상 OT를 통한 사용수칙 안내 - 워칙적으로 불가(진흥원 담담자와 문의) |

※ 위 세목 외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(진흥원 담당자와 문의)



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

- 19 -

(SINGSHX TONK) (국 INK 범의 시 세계자

| 제새대상 시유별 제새 소재(제40소세1항관련) | |
|--|---|
| 제재대상 사유(위반행위 유형) | 제재조치(처리기준) |
| 1. 보조금(지원금)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크(지원금) 횡령 가. 횡령사실이 접발된 경우 나.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| 가. 수사기관에 고발조치, 횡령액 반환조치,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. 횡령액 단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 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|
| 2. 보조금(지원금)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 이 하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.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.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| 는 모소(시원)사업에 내해 시원 중단 가. 수사기관에 고발조치, 횡령액 반환조치,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, 해당자 자체정계 요구 나.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, 해당자 자체 경계 요구 |
| 3. 보조금(지원금)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하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(지원금) 유용 |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해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 용하되,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|
| 4.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(지원 금)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, 허위 또는 위조 들의 방법으로 변경증인을 받아 보조금(지원금) 을 사용한 경우 |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|
| 5.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|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 해 지원 중단 |
| 6. 위조·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 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 한 경우 |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|
| 7.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. 교부(지원)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.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|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,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 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 급(지원금) 기준으로 50%이상 2회 감액 지원 |
| 라. 기획재성부의 예산·기금집행지점을 위반한 경우 | |
| 8.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가,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나. 1.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다. 2년간 보조금(지원금)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조과한 경우 | 가.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 나.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 다.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 |
| 9. 기타 제재대상 사유(위반행위 유형) | |
| 가. 외부압력, 허위,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| 가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|
| 나.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,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| 나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|
| 다.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"불량"인 경우 (다만,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) | 다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|
| 라.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 하지 않거나,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| 라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|
| 마.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줄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| 마. 기술료 해당액 환수 |
| 바.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| 바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|
| 사.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, 지적의 조치 등의 를받거나,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| 사. 향후 5년간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 |
| 아.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| 아.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|

- 20 -

^{**} 상기 8호,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. 단.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. ** 보조금(자원금)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. (단. 8호에 한하여 청하는 보조금(자원금)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.)